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10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 송옥주・임미애・이병진

박해철 • 윤준병 • 이수진

어기구 · 문금주 · 김남희

김태년 • 박 정 • 이원택

의원(12인)

제안이유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어업 재해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낮은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 협소한 지원항목 등으로 농가·어가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를 위한 보조 및 지원 규정에 시중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 가격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문 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국가의 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자연재해로 인 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복구 지원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업재해 중 병해충의 정의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해대책에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안 제2조의2 신설).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재해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농어업재해를 입은 피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해 농작물 등의 시장가 격과 생산비를 고려한 최대한의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생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 8항 신설).
- 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

율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농림축 산식품부에 두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병해충[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따라 발생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으로, "病害蟲)"을 "病 害蟲)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경영안정 및 생산력 향상과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해대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 2.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3.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5.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재해대책을 통한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력 향상과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으로, "마련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복구에"를 "복구 및 생산비 보장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어가에 대한"을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해예방 및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본문 중 "대한"을 "대해서는 농작물 등의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하여 최대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비료대금"을 "비료대금 등 재해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장가격과 재해발생시 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을 통한 생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가 및 어가가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기후위기 전문위원회) 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재 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하 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문위원회(이하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②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1. 제3조제5호에 따른 재해예방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2. 그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와 관련된 사항
- ③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그밖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	2		
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			
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			
(黃砂),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병해충[지구온난화 등</u>		
병해충(<u>病害蟲)</u> , 일조량(日照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여		
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病害蟲)을 포함한다]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			
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			
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			
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 13. (생 략) <u><신 설></u>

- 3. ~ 13. (현행과 같음)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력 향상과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해대책의 발전 방향 및 목 표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3.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5.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 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재해대책을 통한 농 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 력 향상과 생산비 보장을 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u>다음</u>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 1. (생략)
-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u>복구</u>에 관한 사항
- 3. (생략)
-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u>어가에</u>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5. (생략)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
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u>에 따라 다음</u>
<u>마련하여야</u>
<u>한다</u> .
1. (현행과 같음)
2
<u>복구</u>
및 생산비 보장에
3. (현행과 같음)
4
경영안정을 위한
5.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해예
방 및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u>사항</u>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대해서는 농작물 등의 시
장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 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 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 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 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 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 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 1. · 2. (생략)
-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u>비료</u> <u>대금</u>

4. ~ 10. (생략)

- ③ ~ ⑥ (생 략)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⑦

②
1. • 2. (현행과 같음)
3
<u>-</u> 川
료대금 등 재해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 10.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는 <u>농림축산식품부</u>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 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u><신 설></u>

시장가격과 재해
발생 시 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을 통한생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불가피한 사유로 농가 및 어가가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그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 략)<신 설>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5조의2(기후위기 전문위원회)
 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문위원회(이하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는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 1. 제3조제5호에 따른 재해예방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2. 그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u>농</u> 업재해와 관련된 사항
 - ③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위원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위 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그밖에 기후위기 전문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u>제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u> <u>제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u> 의제)(생 략) 의제)(현행 제5조의2와 같음)